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0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년 11월 1일
4.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II. 제안사유

-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함

III.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도 계획안(a)	2024년도 계획(b)	증 감 액(a-b)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472,172	15,513,180	3,958,99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784,263	687,439,983	△304,655,72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65,428	450,735	14,69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876,900	1,267,911,823	△292,034,92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75,642,646	135,417,310	△59,774,664
합계	1,454,241,409	2,106,733,031	△652,491,622

I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05호로 제출되어 2024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52조¹⁾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 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관리·운용은 같은 법 제54조제1항²⁾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학교안전공제회’)³⁾가 맡고 있습니다.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⁴⁾에 따라 특정한

1)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3)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 회를 설립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법 제8조5)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기금 총괄

- 202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기타지원금 32억 7천 2백만원, 예치금회수 15억 6천 8백만원, 이자수입 2억원, 기타 144억 3천 2백만원 등 194억 7천 2백만원 이고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128억 4천 5백만원, 인력운영비 13억 6천 5백만원, 기본경비 2억 6천 2백만원, 예치금 49억 9천 8백만원입니다.

[표-1]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수입 계획			지출항목	지출 계획		
	'25년 수입액 (A)	'24년 수입액 (B)	증 감 (C=A-B)		'25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 감 (C=A-B)
계	19,472,172	15,513,180	3,958,992	계	19,472,172	15,513,180	3,958,992
기타 지원금	3,272,000	2,614,000	658,000	비용자성 사업비	12,845,379	12,118,877	726,502
기부금	0	0	0	용자성 사업비	0	0	0
용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1,364,893	1,557,055	△192,162
예치금 회수	1,567,982	3,532,140	△1,964,158	기본경비	262,338	269,266	△6,928
이자수입	200,019	142,200	57,819	예치금	4,997,562	1,567,982	3,429,580
기 타	14,432,171	9,224,840	5,207,331	기 타	2,000	0	2,000

5)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 수입계획

○ 2025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194억 7천 2백만원으로, 기타지원금 32억 7천 2백만원, 예치금회수 15억 6천 8백만원, 이자수입 2억원, 기타수입(공제료 수입 137억 4천 7백만원, 소방사업수익 2억 2천만원 등) 144억 3천 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155억 1천 3백만원) 보다 39억 5천 9백만원(25.5%)이 증가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수입계획액이 증가하는 예치금회수가 전년도(35억 3천 2백만원) 보다 19억 6천 4백만원(△55.6%)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유·초·중·고 기준 공제료 상승분 반영⁶⁾, 기타지원금 32억 7천 2백만원 등이 수입계획에 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표-2] 2025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천원)

항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19,472,172	15,513,180	3,958,992	25.5%
기타지원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용도 지원금	3,272,000	2,614,000	658,000	25.2%
예치금회수	소 계	1,567,982	3,532,140	△1,964,158	△55.6%
	사무국 임차보증금	248,348	248,347	1	0%
	학교안전공제사업 이월금	326,534	2,028,423	△1,701,889	△83.9%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이월	70,657	97,937	△27,280	△27.9%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	922,443	1,157,433	△234,990	△20.3%
이자수입	이자수입	200,019	142,200	57,819	40.7%
기타수입	소 계	14,432,171	9,224,840	5,207,331	56.5%
	공제료 수입	13,747,352	8,475,075	5,272,277	62.2%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79,904	16,940	62,964	371.7%

6) 교육부고시(제2024-21호, 2024.10.18.),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료 산정기준 고시」

항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소방사업 수익	220,000	200,000	20,000	10%
	여행자공제사업 수입	75,000	65,000	10,000	15.4%
	학교폭력피해구상금	263,915	275,000	△11,085	△4.0%
	법인세 환급금	40,000	44,500	△4,500	△10.1%
	카드포인트	5,000	15,000	△10,000	△66.7%
	보조금반납금수입	1,000	0	1,000	순증
	교원보호공제사업수익	0	133,325	△133,325	△100.0%

1) 기타지원금

- 동 수입액 중 기타지원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학생치료비를 위한 요양급여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별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32억 7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보조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2024년말 동 기금의 조성액은 15억 6천 8백만원인데 공제료 수입은 매년 4월에 발생하므로 1월부터 3월까지의 공제료 지급을 위한 지원금이 필요 하다는 입장입니다.

[표-3] 2025년 보조금 필요액 산출7)

(단위: 천원)

구분	수입	지출	기금수지	보조금	기금 잔액	4개월 준비금
24년말 추정	9,367,040	13,945,198	-4,578,158	2,614,000	1,567,982	0
25년말 추정	14,632,190	14,474,610	157,580	0	1,725,562	3,272,000

7)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안전총괄담당관 (2023.9.)

[표-4] 2024년 월별 기금 추계

(단위: 천원)

구분	수입			지출				잔액 (A+B+C) -(D+E+F +G)
	기금 (A)	공제료 수입(B)	이자수입 등(C)	공제사업 (D)	예방사업 (E)	인건비 (F)	운영비 (G)	
1월	326,534*	0	0	1,016,833	16,517	113,741	21,861	△842,418
2월	0	0	0	1,016,833	16,517	113,741	21,861	△1,168,952
3월	0	0	0	1,016,833	16,517	113,741	21,861	△1,168,952
4월	0	1,050,143**	0	1,016,833	16,517	113,741	21,861	△119,442

※ 326,534천원: 학교안전공제 용도 기금(임차보증금, 학교폭력 피해 지원, 상담지원 용도 제외)

※ 1,050,143천원: 전년도 4월말 학교 개별 징수분 632,235,110원 × 2025년 공제료 인상분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조금 지원의 세부산출 근거로 2023년도 월 평균 보상액 8억 1천 8백만원을 기초로 하여 공제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4개월분(매년 1~4월)에 해당하는 32억 7천 2백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3년간('22~'24년) 매월 1~4월에 발생한 평균 지급 보상액은 약 24억 2천 1백만원으로(818,109천원×4개월) 학교안전공제회가 편성한 32억 7천 2백만원보다 약 8억 5천 2백만원 적은 상황인바, 기타지원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5] 최근 3년간 공제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평균(연도별)
1월	681,943	945,861	1,031,915	2,659,719	886,573
2월	479,219	562,573	529,465	1,571,257	523,752
3월	312,791	402,290	536,857	1,251,938	417,313
4월	452,203	648,160	678,415	1,778,778	592,926
소계	1,926,156	2,558,884	2,776,652	7,261,692	2,420,564
5월	511,883	1,184,561	1,105,238	2,801,682	933,894
6월	639,998	645,003	1,267,285	2,552,286	850,762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평균(연도별)
7월	992,621	1,144,446	801,444	2,938,511	979,504
8월	423,565	657,779	883,067	1,964,411	654,804
9월	491,704	1,602,402	743,812	2,837,918	945,973
10월	629,884	579,185	-	1,209,069	403,023
11월	639,554	668,903	-	1,308,457	436,152
12월	343,419	776,149	-	1,119,568	373,189
합계	6,598,784	9,817,312	7,577,498	23,993,594	7,997,865
평균 (월별)	549,899	818,109	631,458	1,999,466	666,489

*출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학교안전공제회

2)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공제료 수입(유·초·중·고, 특수, 기타, 배움터 지킴이)’ 및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소방사업수익’, ‘학교폭력구상금 회수’ 등 사실상 공제회의 주된 수입원으로, 2025년도에 총 144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92억 2천 5백만원) 대비 56.5%(52억 7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제료 수입(유·초·중·고, 특수, 기타, 배움터 지킴이)’ 이 52억 7천 2백만원 (62.2%)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 ‘공제료 수입(유·초·중·고, 특수, 기타, 배움터 지킴이)’ 은 137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84억 7천 5백만원) 보다 52억 7천 2백만원(62.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부의 공제료 산정기준에 대한 고시액의 인상 및 가산분 적용률 인상(10%→30%)을 적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 이에 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별 공제료는 유치원이 5,200원으로 전년도(3,600원)보다 1,600원, 초등학교는 9,100원으로

전년도(4,700원) 보다 4,400원, 중학교는 22,750원으로 전년도(11,300원) 보다 11,450원, 고등학교는 28,210원으로 전년도(16,100원) 보다 12,11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이러한 고시액 및 적용률 인상은 현실적인 공제료 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6] 교육부고시 공제료⁸⁾

(단위: 원)

구분	2025년 공제료	2024년 공제료
유치원	4,000	3,600
초등학교	7,000	4,700
중학교	17,500	11,300
고등학교	21,700	16,100
가산율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 가감조정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30% 이내 가감조정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2025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고시공제료 대비 인상률)	5,200 (30%)	9,100 (30%)	22,750 (30%)	28,210 (30%)	16,315 (30%)

- 그러나 공제료 수입을 위한 학생수 추계에 있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2024~2028년 중기 교육재정계획’ 상의 2025년 학생 수(800,791명)를 기초로 하였으나, 동 자료는 2023년 7월에 발표된 것으로 ‘2025~2029년 중기 교육재정계획’에 발표된 학생 수(801,618명)보다 △827명 적은 상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은 공제료 단가 뿐만 아니라 학생수 산정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추계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교육부고시(제2024-21호, 2024.10.18.),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료 산정기준 고시」

[표-7] 학생 수 변동 추이 반영

(단위: 명, 원)

구분	'24~'28년 중기서울 교육재정계획	'25~'29년 중기서울 교육재정계획)	증감(A-B)
유치원	56,317	57,200	△883
초등학교	337,820	337,801	19
중학교	197,406	197,588	△182
고등학교	201,874	201,809	65
특수학교	4,015	3,628	387
기타학교	3,359	3,592	△233
합 계	800,791	801,618	△827

-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 ‘배움터지킴이’ 를 「학교안전법」 상의 ‘교육활동참여자⁹⁾’ 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공제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금번 수입액은 8천만원으로 전년도 (1천 7백만원) 보다 6천 3백만원(371.7%) 증가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소방사업’ 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수익사업으로¹⁰⁾수입금 1억 7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익이 증대되어 2025년의 수입은 23억 4천 5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9.0%(12억 7천 4백만원) 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9)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표-8] 소방시설안전점검사업 수입지출내역

(단위: 천원)

회계 연도	계약 학교 수	전년도 이월액 (A)	수입 (B)	지출				수지차 (D=B-C)	다음연도 이월액 (E=A+D)
				전출금	운영비	인건비	계(C)		
2017	408	96,323	1,070,440	120,000	320,580	577,408	1,017,988	52,452	148,775
2018	476	148,775	1,262,084	120,000	392,758	744,595	1,257,353	4,731	153,506
2019	534	153,506	1,498,646	120,000	379,777	820,397	1,320,174	178,472	331,978
2020	577	331,978	1,658,565	160,000	394,221	939,070	1,493,291	165,274	497,252
2021	592	497,252	1,748,672	271,000	393,442	969,935	1,634,377	114,295	611,547
2022	611	611,547	1,847,735	160,000	419,836	1,063,511	1,643,347	204,388	815,935
2023	620	815,940	2,042,180	500,000	523,907	1,230,961	2,254,868	-212,688	603,252
2024	597	686,130	2,247,500	200,000	559,670	1,303,160	2,062,830	184,670	870,800
2025	550	870,800	2,344,780	220,000	607,178	1,418,553	2,245,731	99,049	969,849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사업의 경우 공제회 조직에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 전출금 규모가 낮아지는 등 지난 8년간(2017~2024년) 수입금 대비 기금 전출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전출금 규모를 일관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사업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바, 학교안전공제회는 서울특별시 관내 교육 시설을 지속 발굴하여 계약학교 수를 확대해 나가고, 교육 시설별 전담기사의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동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방사업 이외에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여행자동행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서 일부를 공제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는바, 2025년 ‘여행자동행공제사업수익’은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6천 5백만원)보다 1천만원 증가하였고,

‘교원보호공제사업수익’은 전년도에는 1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사업비 및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공제기금으로의 전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표-9] 교원보호공제사업 예산

(2024. 10. 31. 기준/단위: 천원, %)

구분	세 입					세 출				이월금 (예치금)	전출금	
	공제료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이월금	소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소계			
2024	지출액	1,312,134	5,704	642	151,663	1,470,143	621,075	105,817	37,033	763,925	0	133,325
	비율	89.3	0.4	0	10.3	100	81.3	13.9	4.8	100	0	17.5
2025	예산액	1,312,134	10,000	5,000	7,403	1,334,537	999,460	236,597	98,480	1,334,537	0	0
	비율	98.3	0.7	0.4	0.6	100	74.9	17.7	7.4	100	0	0

※ 2024년 전출금 133,325천원은 2024.11.1. 전출

[표-10] 여행자동행공제사업 예산

(2024. 10. 31. 기준/단위: 천원, %)

구분	세 입				세 출				이월금 (예치금)	전출금	
	공제료	이자 수입 등	이월금	소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소계			
2024	지출액	380,945	2,869	140,998	524,812	43,624	41,067	29,705	114,396	-	65,000
	비율	72.6	0.5	26.9	100	38.1	35.9	26.0	100	-	56.8
2025	예산액	487,200	9,673	220,035	716,908	201,475	108,632	104,564	414,671	227,237	75,000
	비율	68.0	1.3	30.7	100	48.6	26.2	25.2	100	54.8	18.1

- 한편 2025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으로¹¹⁾,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은 서울시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

교육청에 반납될 예정으로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금
전출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바,

학교안전공제회 자체 수익사업 수입은 감소될 상황으로 학교안전
공제회는 현재 공제회 정관¹²⁾에 따라 소방사업, 여행자동행공제사업
외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예치금회수

- ‘예치금 회수’ 는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2025년도 수입액은 15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35억 3천 2백만원) 대비 19억 6천 4백만원(△55.6%)이
감소하였습니다.

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당·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2.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3.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4.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5.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써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
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
6. 교원의 업무 중 배상책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급 등 교원의 직무수행상 안
전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표-11] 예치금회수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항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액(%)
예치금회수	1,567,982	3,532,140	△1,964,158(△55.6%)

라. 지출계획

- 2025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공제사업 122억 2백만원, 예방사업 1억 9천 8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2천 9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청구권행사 4억 1천 6백만원, 재무활동 49억 9천 8백만원, 기관운영 2억 6천 2백만원, 인건비 13억 6천 5백만원 등 194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것은 2024년(155억 1천 3백만원) 대비 39억 5천 9백만원 (25.5%)이 증가된 것입니다.
- 동 기금 지출의 주된 증액 사유는 공제사업 지출의 전년도(113억 7천 3백만원) 보다 8억 2천 9백만원(7.3%)이 증가 한 것과 보유 준비금의 전년도(5억 7천 5백만원) 보다 35억 9천만원(624.5%)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표-12] 2025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 감		
				증감액 (A-B)	증감율	
학교 안전망 구축	공제 사업	공제급여 지급	11,781,200	10,970,400	810,800	7.4%
		심사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	31,150	34,260	△3,110	△9.1%
		보상심사위원회	21,500	16,800	4,700	28.0%
		소송업무 수행	263,450	246,940	16,510	6.7%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등 비용지원	25,500	25,500	0	0

항목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 감		
				증감액 (A-B)	증감율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19,200	19,200	0	0	
		중양회 분담금	60,000	60,000	0	0
		소계	12,202,000	11,373,100	828,900	7.3%
	예방사업		198,200	189,607	8,593	4.5%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28,690	30,180	△1,490	△4.9%
	학교폭력피해지원		416,489	525,990	△109,501	△20.8%
	교육 일반	재무 활동	보유준비금	4,164,873	574,882	3,589,991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예치금			44,767	70,657	△25,890	△36.6%
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			787,922	922,443	△134,521	△14.6%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5,360	23,800	1,560	6.6%
		운영비	236,978	245,466	△8,488	△3.5%
소 계		5,259,900	1,837,248	3,422,652	186.3%	
예비비	예비비	2,000	0	2,000	순증	
인건비	인건비	1,364,893	1,557,055	△192,162	△12.3%	
계		19,472,172	15,513,180	3,958,992	25.5%	

1) 공제사업

- ‘공제사업’은 학생 등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사업 총 지출액(122억 2백만원)의 96.6%는 ‘공제급여 지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공제급여 지급’(117억 8천 1백만원)은 전년도(109억 7천만원)보다 8억 1천 1백만원(7.4%)이 증가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처럼 동 사업의 지출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공제급여 지급 중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중 소송청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표-13] '공제급여 지급'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산출기초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C=A-B)
공제사업	요양급여	347,000원 x 24,000건	8,397,400	7,904,000	493,400
	장해급여				
	1)직접청구	100,000,000 x 10건	1,000,000	1,504,400	△504,400
	2)소송청구	130,600,000 x 13건	1,697,800	876,000	821,800
	간병급여	16,000,000 x 1건	16,000	16,000	0
	유족급여	630,000,000 x 1건	630,000	630,000	0
위로금	40,000,000 x 1건	40,000	40,000	0	

- 먼저 '요양급여' 는 학교안전 사고발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건수의 증가를 예측하여, 동 사업비를 전년 대비 4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한 83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14] '공제사업'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5년 지출액(A)	'24년 지출액(B)	증감(C=A-B)
공제사업	공제급여 지급	11,781,200	10,970,400	810,800
	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	31,150	34,260	△3,110
	보상심사위원회	21,500	16,800	4,700
	학교안전사고 소송업무 수행	263,450	246,940	16,510
	손해방지 및 긴급조치 비용 지원	25,500	25,500	0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19,200	19,200	0
	중앙회 분담금	60,000	60,000	0

2) 예방사업

- 예방사업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1억 9천만원) 보다 860백만원(4.5%) 증가한 1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학교안전교육 원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3천 5백만원, ‘학교안전교육 집합 연수 운영’에 2천 9백만원,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연구에 1천 1백만원,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4천만원 이외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등 홍보성 사업에 3천 9백만원, 자문단 운영 1천 5백만원, 신사업 및 조직 개선 연구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표-15] 예방사업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C=A-B)
학교안전교육 원격 콘텐츠 개발	원고료 및 강사료	5,000	4,500	500
	콘텐츠 제작 등	30,000	24,500	5,500 (22.5%)
	업무협의비	200	200	0
학교안전교육 집합 연수	교재인쇄비	1,200	1,200	0
	원고료	1,200	1,200	0
	강사료	3,000	3,000	0
	위탁기관 운영비	21,000	20,160	840
	홍보물품 제작 등	2,100	2,100	0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 연구	위탁연구비	7,500	7,500	0
	보고서 디자인	3,000	900	2,100 (233.3%)
빅데이터기반 학교 안전사고 예보	카드뉴스 제작	35,000	30,000	5,000 (16.7%)
	전문가 자문감수	5,000	5,000	0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심사수당	3,000	3,000	0
	시상금	8,000	8,000	0
	홍보 및 운영	5,000	5,000	0
학교안전공제 안내 등 사업별 홍보	홍보물품 제작 배포	5,000	0	5,000 (순증)
	언론 홍보	10,000	10,000	0
	홍보방법 다양화	8,000	13,307	△5,307 (△39.9%)
학교안전자문단(컨설팅운영)		15,000	20,000	△5,000 (△25%)
신사업 및 조직 개선 연구(연구용역)		30,000	30,040	△40 (△0.1%)
합 계		198,200	189,607	8,593 (4.5%)

-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안전교육 원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지역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원격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에서 콘텐츠 제작 비용(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리고 ‘학교안전교육 집합 연수 운영’ 사업은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¹³⁾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사립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직무 역량 향상과정과 학교안전법 및 교육시설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와 대부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 한편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 연구’는 보고서 디자인을 위해 2천 1백만원 증액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사·연구에 관한 연구 산출물은 지난 4년간(2019~2023년) 단 5건에 불과하고 2024년에는 단 1건 밖에 수행되지 않은바, 조사·분석·연구 활동이 아닌 디자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표-16]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연구 산출물

연도	연구명
2023년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사례집
2021년	2021 학교안전사고 빅데이터 분석(파일 미제공)
2019년	학교안전교육과정 연구
	학교안전공제의 담보개발 및 적정 공제료 산출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연구

*출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ssia.or.kr/prevention/page2.php>)

13)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다음으로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안내 등 사업별 홍보’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웹툰(포스터) 등의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홍보물품 제작 배포 예산의 경우 금년도 예산안에 5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학교안전자문단 운영’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및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지출액 대비 감액편성(5백만원)하였으며, ‘신사업 및 조직 개선 연구’ 용역(3천만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청구권 행사

-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청구권 행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공제회가 우선 지원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5억 2천 6백만원) 대비 1억 1천1백만원(20.8%) 감액한 4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17]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청구권 행사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C=A-B)
학교폭력 피해지원	가. 심리상담비	239,181	260,000	△20,819
	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48,928	226,840	△77,912
구상권 행사 경비(소송 및 집행비용)		26,400	37,500	△11,100
자문료		1,980	1,650	330
합 계		416,489	525,990	△109,501

- 우선 ‘심리상담비’의 경우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심리상담비 지출이 2023년 대비 44.4% 증가(8천만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총 2억 6천만원(1,300천원×200건)을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4년 10월 기준으로 심리상담비의 지급 건수는 당초 예측치 보다 50% 이상 감소하였는바,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7% 감액하여((’24)200건→(’25)183건), 183건을 기준으로 2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18] ‘심리상담비’ 사업 현황

연도	지급건수(건)	지출금액(원)	지급건수 증감율	지급금액 증감율
2021년	88	75,710,110	-	-
2022년	109	88,806,480	23.9%	17.3%
2023년	186	170,115,866	70.6%	91.6%
2024년	104	118,401,060	△44.1%	△30.4%
2025년(예산)	183	239,181,000	75.6%	102.0%

※ 2024년의 경우, 2024.10.31. 기준 작성

-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 중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사업 또한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심리상담비 지출 증가 69.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총 2억 4천만원(3,000천원×80건)을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4년 10월 기준으로 심리상담비의 지급 건수는 또한 당초 예측치 보다 50% 이상 감소하였는바,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7% 감액하여((’24)200건→(’25)183건), 183건을 기준으로 2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19] '학교폭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사업 현황

(단위: 건, 원, %)

구분	지급건수(건)	지출금액(원)	지급건수 증감율	지급금액 증감율
2021년	37	56,579,060	-	-
2022년	59	86,833,030	59.5%	53.5%
2023년	55	139,113,340	△6.8%	60.2%
2024년	37	57,749,500	△32.7%	△58.5%
2025년(예산)	64	148,928,000	73.0%	157.9%

※ 2024년의 경우, 2024.10.31. 기준 작성

- 상기한 2024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한 예측 건수는 실제 발생 건수와 큰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예산 편성 시에도 예상 지급 건수와 실제 지급 건수 간에 큰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예상 지급 건수와 실제 지급 건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예치금

[표-20]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C=A-B)
보유준비금	가. 보유준비금	3,916,525	326,534	3,589,991
	나. 임차보증금	248,348	248,348	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예치금		44,767	70,657	△25,890
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		787,922	922,443	△134,521
합계		4,997,562	1,567,982	3,429,580

- 동 기금의 예치금은 49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15억 6천 8백만원)

보다 34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교육부의 공제료 산정기준 인상과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공제료 수입이 급증하여 보유준비금 적립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21] 최근 5년 보유준비금 적립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	2025년 (계획)
보유준비금	8,062	8,471	7,311	3,352	1,568	4,998

※ 2023년도말 현재액은 결산액 기준, 2024~2025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 기준

5)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표-22] '기관운영비' ,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C=A-B)
기관 운영비	가. 업무추진비	25,360	23,800	1,560 (6.6%)
	나. 운영비	236,978	245,466	△8,488 (△3.5%)
	소 계	262,338	269,266	△6,928 (△2.6%)
인 건 비	보수(월급여)*	976,685	1,221,194	△244,509 (△20.0%)
	수당	267,334	229,568	37,766 (16.5%)
	4대보험	120,874	106,293	14,581 (13.3%)
	소 계	1,364,893	1,557,055	△192,162 (12.3%)

*보수(월급여): 기본급+정근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정근가산금+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등

- '기관운영비' 는 전년도(2억 6천 9백만원) 대비 7백만원(△2.6%) 감소한 2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는 전년도(15억

5천 7백만원) 대비 1억 9천 2백만원(12.3%)이 감소한 13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한편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 교육 훈련비, 회의 운영비 등 총 850만원을 감액하여 전반적인 공제회 운영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인정되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대비 6.6%(150만원) 증액 편성은 것은 기관 전반적으로 운영비 절감을 통해 재정적자 해소 노력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외에도 월급여와 기본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보수)’의 경우 2024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2.3% 감액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공제회 기금운용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기본 인건비 감액 절감 노력과 상반되게 초과근무, 직책급업무추진 경비 등을 포함한 별도 수당은 전년보다 3천 8백만원 증액 편성(16.5%)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실제 공무원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초과근무 수당이 산출되었다는 증액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한 법인으로 법적인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근로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¹⁴⁾을 적용한 인건비 산출 기준에 타당한

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측면이 있으나,

동 기관의 설립 목적으로 볼 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체계를 일부 참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표-23]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 일,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수입 항목	'25년 수입액(a)	'24년 수입액(b)	증감 (c=a-b)	지출 항목	'25년 지출액(a)	'24년 지출액(b)	증감 (c=a-b)
합 계	382,784,263	687,439,983	△304,655,720	합계	382,784,263	687,439,983	△304,655,720
교특회계 전입금	0	0	0	비용자성 사업비	0	330,000,000	△330,000,000
기부금	0	0	0	용자성 사업비	0	0	0
용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 회수	357,439,983	665,663,025	△308,223,042	예치금	382,784,263	357,439,983	25,344,28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수금	0	0	0	예수금 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25,344,280	21,776,958	3,567,322	기본경비	0	0	0
기 타	0	0	0	기 타	0	0	0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15)에 따라 설치·

15)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운용되는 법정기금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7월 1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¹⁶⁾를 제정하여 동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53억 4천 4백만원, 예치금 회수 3,574억 4천만원 등 3,827억 8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인 예치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이자수입은 253억 4천 4백만원으로 2024년도 운용계획안 이자수입 217억 7천 7백만원보다 35억 6천 7백만원 (16.4%) 증가된 것입니다.

- 이는 ‘서울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2025년~2028년)’ [별표 1]¹⁷⁾에 따라 예치 당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수입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6) 동 조례는 2021년 9월 30일, 일부개정되어 제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됨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별표1] 예금에 대한 금리 (금고 약정서 제6조 관련)

※ 금리적용방법

1. ~ 3. 생략

4. 2024. 12. 31. 이전에 예치한 정기에금 등의 해지시까지의 금리는 예치 당시의 약정금리를 따름.

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동 기금을 세 개 계좌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금리 3.67%~3.77%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입의 규모와 동일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4] 2025년도 이자수입 현황

(단위: 천원, %, 일)

연번	예치금액	예치금리	예치기간	발생이자
1	9,864	3.77%	728일	742
2	203,117,834	3.67%	719일	14,684,195
3	154,312,285	3.67%	687일	10,659,343
합계	357,439,983			25,344,280

- 다만 동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감소로 인해 전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수입은 오롯이 이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변경된 ‘서울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2025년~2028년)’에 따라 적용되는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상시 점검하여 기금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바, 이는 동 기금의 목적이 당장 필요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되기보다 향후 발생될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예비적 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이기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

가. 기금 개관

-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등에게 시행하는 생태전환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 동 기금은 2022년 10억원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었으나 2023년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이라는 단일 사업에만 지출되고, ‘농촌유학’ 예산이 본예산과 기금에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등 부적정한 기금운용의 문제가 지적됨에¹⁸⁾ 따라 폐지가 추진되었습니다.
- 이에 “기금의 폐지·통합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¹⁹⁾ 따라 기금의 조성·운용 근거가 되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가 추진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폐지 추진 개요는 아래 표 참조)

[표-25]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추진 개요

일자	주요 내용
2023. 5.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06호)
2023. 6.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회부 및 입법예고 진행
2023. 7. 3.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2023. 7. 5.	조례안 본회의 심사·의결
2023. 7. 6.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7. 26.	조례안 재의 요구 (교육청 → 시의회)

18)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관한 주요 지적사항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22.11.29.),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46-51쪽;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23.7.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등 참조.

19) 행정안전부(2024.7.),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26쪽.

일자	주요 내용
2023. 9. 15.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재의결
2023. 9. 18.	확정조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9. 27.	폐지조례 의장 공포
2023. 10. 4.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 (재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2023. 10. 17.	대법원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10월 4일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폐지조례 시행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²⁰⁾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에 동 기금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의 폐지나 제·개정이 불가해짐에 따라 기금 폐지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나. 수입·지출 계획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24년까지 총 4억 5천 7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2025년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수입액은 4억 6천 5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5천 7백만원과 이자 수입 1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제12조제1항에²¹⁾ 따른 기금은

20) 대법원 2023. 10. 17. 선고 2023쿠10(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관련

2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에 해당하느바, 수입 계획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동 기금의 지출액은 예치금 4억 5천 7백만원으로, 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출계획은 앞서 언급한 사실과 같이 동 기금의 폐지 절차가 소송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에 기인하므로 지출계획에서도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이 소송 종결 시까지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²²⁾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22)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 2023.7.28. 시행)」에 따르면,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가. 기금총괄

- 동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23)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으로서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24)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동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

2025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9억 4천 6백만원, 예치금 회수 9,449억 3천 1백만원 등 9,758억 7천 7백만원이고, 지출계획에서는 비용자성사업비 1,086억 4천 2백만원, 예치금 8,672억 3천 3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표-26] 기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 항목	'25년 수입액(A)	'24년 수입액(B)	증 감 (C=A-B)	지출 항목	'25년 지출액(A)	'24년 지출액(B)	증 감 (C=A-B)
합 계	975,876,900	1,267,911,823	△292,034,923	합 계	975,876,900	1,267,911,823	△292,034,923
교특회계 전입금	0	0	0	비용자성 사업비	108,642,177	107,265,104	1,377,073
예치금 회수	944,931,161	1,236,491,505	△291,560,344	예치금	867,232,723	1,160,643,719	△293,410,996
이자수입	30,945,739	31,420,318	△474,579	기본경비	2,000	3,000	△1,000

나. 수입계획

- 2025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예치금 회수 9,449억 3천 1백만원, 이자수입 309억 4천 6백만원입니다.
- 2021년 동 기금이 설치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기금을 활용하여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학교단위 공간혁신’, ‘민간투자 사업상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2021년도에 3,184억 1천 1백만원, 2022년에 9,678억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2023년의 경우 본 예산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3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2,315억원을 기금으로 미전출하였습니다.
- 또한 2024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2,99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결위에서 감액되어 2,685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 후 서울특별시교육감 궐위로 「공직선거법」 제200조 등에 의거 실시되는 보궐선거(2024.10.16.)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 경비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 간 세출예산 이용 승인이 이루어져²⁵⁾ 기금전출금에서 565억 4천 3백만원을 사용하였고,
 - 잔액 2,120억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운영 계획²⁶⁾에 따라 기금으로 미전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번 2025년의 기금운영계획안에서도 ‘그린스마트미래 학교’ 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만 편성, 기금으로는 전출하지 않았는바, 동 기금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표-2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소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교육환경 개선	민간투자 사업상환	
2021	88,411,000	0	230,000,000	0	318,411,000
2022	161,980,000	59,020,000	0	746,841,767	967,841,767
2023	0	0	0	0	0
2024	0	0	0	0	0
2025	0	0	0	0	0
합 계	250,391,000	59,020,000	230,000,000	746,841,767	1,286,252,767

○ 한편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7천 5백만원 감액된 309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액을 11개의 정기에금에 분할하여 예치하고

25)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원안 가결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24.9.11.)

26)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계획 알림 및 제출 안내」 (예산담당관-9246, 2024.10.14.)

있으며, 이렇게 예치된 정기예금은 예치 상품, 예치 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바 이에 따른 이자수입 총액은 309억 4천 6백만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2025년도 상반기에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6개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치금액 및 기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2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율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예치상품	이자율	예치금액	예정 이자수입	예정 예치기간
농협	정기예금	3.77%	40,205,180	1,515,735	2024.2.29. ~ 2025.2.28.
농협	정기예금	3.26%	53,962,099	1,759,164	2024.11.13. ~ 2025.11.13.
농협	정기예금	3.26%	25,381,275	827,430	2024.11.24. ~ 2025.11.24.
농협	정기예금	3.16%	860,147	27,181	2024.11.25. ~ 2025.5.25.
농협	정기예금	3.16%	846,924	26,763	2024.11.27. ~ 2025.5.27.
농협	정기예금	3.16%	1,270,079	40,134	2024.11.30. ~ 2025.5.30.
농협	정기예금	3.26%	238,115,869	7,762,577	2024.12.12. ~ 2025.12.12.
농협	정기예금	3.11%	28,000,000	870,800	2024.12.22. ~ 2025.3.22.
농협	정기예금	3.16%	25,000,000	790,000	2024.12.22. ~ 2025.6.22.
농협	정기예금	3.16%	28,000,000	884,800	2024.12.22. ~ 2025.9.22.
농협	정기예금	3.26%	504,329,902	16,441,155	2024.12.22. ~ 2025.12.22.
합계			945,971,475	30,945,739	

다. 지출계획

[표-29] 2025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계획						목	산출기초	'25년 지출액(A)	'24년 지출액(B)	증감 (A-B)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교육								975,876,900	1,267,911,823	△292,034,923
교육일반								975,876,900	1,267,911,823	△292,034,923
교육행정일반								2,000	3,000	△1,000
기관운영								2,000	3,000	△1,000
위원회운영								2,000	3,000	△1,000
위원회수당						210 운영비	100,000원×5명×4회	2,000	3,000	△1,000
재무활동								975,874,900	1,267,908,823	△292,033,923
지방채상환및리스크								108,642,177	107,265,104	1,377,073
민간투자사업 상환								108,642,177	107,265,104	1,377,073
BTL운영비						210 운영비	7,707,303,500원 ×4분기	30,829,214	30,055,212	774,002
BTL원금						510 상환 지출	16,230,180,750원 ×4분기	64,920,723	63,435,517	1,485,206
BTL이자						510 상환 지출	3,223,060,000원 ×4분기	12,892,240	13,774,375	△882,135
예치금								867,232,723	1,160,643,719	△293,410,996
예치금								867,232,723	1,160,643,719	△293,410,996
예치금						520 예치금	867,232,723,000원	867,232,723	1,160,643,719	△293,410,996
지출 합계								975,876,900	1,267,911,823	△292,034,923

- 2025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9,758억 7천 7백만원으로 민간 투자사업상환 중 BTL원금(임대료)이 649억 2천 1백만원, BTL 이자가 128억 9천 2백만원, BTL 운영비가 308억 2천 9백만원 이고, 예치금은 8,672억 3천 3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동 기금의 BTL 상환금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BTL 방식으로 추진한 20개 사업, 141개교²⁷⁾(신축 34교, 개축 55교, 체육관 52교)의 원금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 이에 금번 운용계획안에는 141개교의 ‘2025년도’ 임대료(이자 포함) 및 운영비 등으로 1,086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0] BTL 사업 상환 대상 사업유형

(단위: 교, %)

사업유형	학교수 (비율)
신축	33교 (23.4%)
개축	56교 (39.7%)
소규모(체육관)	52교 (36.9%)
전체	141교 (100%)

[표-31] BTL 총 지급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기 지급액(A) (2024년까지)	지급 예정액		총지급예정액 (A+D)
			2025년(B)	2026년 이후(C)	
임대료 (교부금)	원금	244,044,583	-	-	244,044,583
	이자	190,104,040	-	-	190,104,040
	소계	434,148,623	-	-	434,148,623
임대료 (자체)	원금	491,872,207	64,920,723	289,251,487	846,044,417
	이자	301,199,638	12,892,240	17,884,082	331,975,960
	소계	793,071,845	77,812,963	307,135,569	1,178,020,377

27) BTL상환 대상학교의 사업연도 (단위 : 교, %)

사업 연도	학교수 (%)
2005년	7 (5.0%)
2006년	66 (46.8%)
2007년	61 (43.3%)
2008년	4 (2.8%)
2009년	3 (2.1%)
전체	141 (100.0%)

구분	기 지급액(A) (2024년까지)	지급 예정액		총지급예정액 (A+D)	
		2025년(B)	2026년 이후(C)		
임대료 (계)	원금	735,916,790	64,920,723	289,251,487	1,090,089,000
	이자	491,303,678	12,892,240	17,884,082	522,080,000
	소계	1,227,220,468	77,812,963	307,135,569	1,612,169,000
운영비	387,045,212	30,829,214	130,541,574	548,416,000	
합계	1,614,265,680	108,642,177	437,677,143	2,160,585,000	

- 한편 BTL 운영비는 매 분기 운영 종료 후 성과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운영비를 감액하고 있는바, 성과평가 결과 A등급일 경우 운영비 감액이 없으며, B등급은 5% 감액, C등급은 10% 감액, D등급은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표-32] BTL사업 운영성과 평가 등급에 따른 운영비 감액 비율

평가 결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운영비 감액비율	없음	5% 감액	10% 감액	50% 감액

- 그러나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B등급 학교는 6개교, C·D등급 이하인 학교는 전무한 상황인 바,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가 감액되는 학교가 없습니다.
- 이는 2022년 4분기의 경우 BTL사업 25개교 중에 24개교가 성과평가 A등급을 의미하고, 2023년 2분기의 경우에도 BTL사업 24개교 중에 22개교가 성과평가 등급 A를 의미합니다.
-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분기별로 시행중인 BTL 운영성과 평가 항목이 달성이 용이한 지표로만 구성된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성과 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3] BTL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감액 현황

연번	사업명	학교명	성과평가 등급	성과평가 시행 분기	운영비 감액 비율	감액 운영비(원)
1	신대림초 외 25교 BTL	한강미디어고	B	2022년 4분기	5%	209,800
2	전농초 외 5교 BTL	중화초	B	2023년 1분기	5%	3,731,870
3	신동초 외 4교 BTL	미아초	B	2023년 1분기	5%	1,464,860
4	신대림초 외 25교 BTL	한강미디어고	B	2023년 1분기	5%	212,300
5	봉화초 외 24교 BTL	한강중	B	2023년 2분기	5%	127,800
6	봉화초 외 24교 BTL	한강중	B	2023년 2분기	5%	130,000
			소 계			5,876,630
7	그 외 BTL		A		0%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운용계획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항목을 ‘기관운영’ 비로 분류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기금 지출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등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기본경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교육전문위원실의 예비심사보고서²⁸⁾에서도 지적된바, 동 기금 지출계획의 위원회수당 편성항목은 ‘기관운영’이 아닌 ‘기본경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8)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p36 참조

- 또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촉직의 인원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 등에 따른 민간전문가 1/3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 문제는 없으나, 위촉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촉위원 중 전직 교육청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간전문가를 1/3이상 포함하도록 한 지방기금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이미 당연직으로 교육청 직원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민간전문가로 전직 교육청 직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동 기금계획안에 첨부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5년 10월 외부 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시에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임기
당연직	위원장	설○○	부교육감	재임기간
	위원	정○○	교육행정국장	재임기간
	위원	조○○	기획조정실장	재임기간
	위원	엄○○	교육시설안전과장	재임기간
	위원	박○○	예산담당관	재임기간
위촉직	부위원장	구○○	서울시의회 의원	2023.10.~2025.10.
	위원	성○○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교수	2023.10.~2025.10.
	위원	신○○	회계사, 한영회계법인 근무	2023.10.~2025.10
	위원	양○○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	2023.10.~2025.10
	위원	정○○	(前)교육행정국장	2023.10.~2025.10
	위원	강○○	건축사사무소 세움 대표	2023.10.~2025.10

신청사 건립기금

가. 기금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은 2016년 7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 동 기금은 2016년에 조성되어 2020년 말까지 존속예정이었으나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에 따른 신청사 건립 사업 규모 축소 및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2020년 12월 16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연수원 신규 건립 추진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연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현재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운용 중입니다.

[표-35] 신청사 건립 주요 추진 경과

추진일정	추진내용
2006. 4. 29.	서울시교육청 청사 신축·이전 계획 수립
2009. 4. 2.	(舊) 수도여고 부지로 청사이전 추진 결정
2013. 2. 13.	용산구청과 청사 이전 관련 MOU 체결
2013. 8. 9.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13. 12. 4.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시의회(교육위원회) 심의
2016. 7. 7.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7. 4. 1.	신청사 건립 전담부서 교육공간기획단 신설
2020. 9. 14.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1차 변경 (사업규모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2021. 8. 27.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2차 변경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비 조정)
2021. 12. 13.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3차 변경 (예비비 편성)
2022. 3. 23.	착공식
2022. 6. 13.~7.5.	제1차 공사중지 (관급자재 수급 곤란)
2022. 1. 5.	오염토 발생신고
2022. 1. 25.~4. 16.	제2차 공사중지
2023. 1. 16.~2. 24.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
2023. 4. 17.~2024. 4. 10.	토양오염 반출정화 공사
2023. 6. 28.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4차 변경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2023. 7. 1.	청사이전추진단 신설
2024. 8. 27.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5차 변경 (사업비 증가)

○ 동 기금의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83억 2천 6백만원과 이자수입 73억 1천 7백만원 등 총 756억 4천 3백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756억 4천 3백만원입니다.

[표-36] 기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5년 수입액(A)	'24년 수입액(B)	증 감 (C=A-B)	지출항목	'25년 지출액(A)	'24년 지출액(B)	증 감 (C=A-B)
합 계	75,642,646	135,417,310	△59,774,664	합 계	75,642,646	135,417,310	△59,774,664
교특회계 전입금	-	-	-	기관운영 (비용자성 사업비)	75,642,646	67,091,293	8,551,353
기부금	-	-	-	용자성 사업비	-	-	-
용자금 회수	-	-	-	인력 운영비	-	-	-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5년 수입액(A)	'24년 수입액(B)	증 감 (C=A-B)	지출항목	'25년 지출액(A)	'24년 지출액(B)	증 감 (C=A-B)
예치금 회수	68,326,017	133,463,502	△65,137,485	재무활동 (예치금)	-	68,326,017	△68,326,017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수금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7,316,629	1,953,808	5,362,821	기본경비	-	-	-
기타	-	-	-	기타	-	-	-

나. 수입계획

- 2025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756억 4천 3백만원이며, 이는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예치금 683억 2천 6백만원과 이자수입 73억 1천 7백만원만을 합한 것입니다.

[표-37] 2025년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5년 수입액(A)	'24년 수입액(B)	증감 (C=A-B)
[50000]내부거래				-	-	-
		[51000]전입금		-	-	-
		[51100]전입금		-	-	-
		[5110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40000]기타				68,326,017	133,463,502	△65,137,485
		[42000]예치금회수		68,326,017	133,463,502	△65,137,485
		[42100]예치금회수		68,326,017	133,463,502	△65,137,485
		[42101]예치금회수		68,326,017	133,463,502	△65,137,485
[20000]자체수입				7,316,629	1,953,808	5,362,821
		[24000]이자수입		7,316,629	1,953,808	5,362,821
		[24100]이자수입		7,316,629	1,953,808	5,362,821
		[24101]예금이자수입		7,316,629	1,953,808	5,362,821
수입 합계				75,642,646	135,417,310	△59,774,664

- 동 기금의 현재 조성 목표액은 1,689억원으로,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1,610억원이며 향후 이자수입만으로 조성 목표액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별도의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8]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현황 (2024.11.7.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조성액			집행액			잔액 (C=A-B)
	합계(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합계(B)	기관운영(공사비)	기타	
금액	1,610	1,547	63	368	368	-	1,242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근무인원 증가로 인한 건립 규모 변동, 철근·시멘트 등 관급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소요액을 1,76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계에 따르면 동 기금의 현재 조성 목표액인 1,689억원으로는 78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해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표-39] 신청사 건립기금 총 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최초 사업비 (A)	변경 내역			총사업비 (24. 8. 27.) (C=A+B)	변경 사유
	규모변동	물가변동	합계(B)		
1,299	298	170	468	1,7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레미콘 물가상승 등 • 조직개편 등 근무인원 증가 (설계: 620명→ 현재: 778명)

[표-40] 신청사 건립기금 총 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합계	재원 내역				비고
	토지 매각 대금 (종료)	보통교부금 (2021, 2022)	이자수입 (향후 발생 예상액 포함)	부족액 (확보 필요액)	
1,767	1,217	330	142	78	

- 그러나 신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의 용도 측면에서 “신청사 건립 공사비 부족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동 기금안의 수입계획 중 2025년 수입액 관련하여 2025년 본예산에 420건설비로 편성된 78억원을 동 기금의 교특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동 기금의 이자수입은 12개의 정기예금에 분할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예치된 정기예금은 예치상품, 예치 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 바 이에 따른 이자수입 총액은 73억 1천 7백만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12개 계좌에서 이율 3.38%~4.0%로 각각 예치되어 있는데 이미 만기일이 도래한 것은 11개 계좌이고, 2025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1개 계좌입니다.
- 이는 정기예금 약정기간 만기 도래 이후에도 해지시까지 현재 시점의 이율보다 높은 최초 약정 금리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높은 이율에 따른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기금도 신청사 건립 기금의 정기예금 만기 이후에도 최초 약정 금리 지속 방식을 참고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41] 신청사 건립기금의 정기예금 예치현황

(단위: 천원)

예치일	만기일	이율(%)	예치액
2022-12-14	2024-01-31	3.67	19,200,000
2023-01-12	2023-04-12	4.00	4,700,000
2023-01-12	2023-04-12	4.00	10,108,882
2023-01-12	2023-04-12	4.00	20,912,700
2023-01-12	2023-04-12	4.00	11,200,000
2023-02-10	2023-05-10	4.00	1,700,000
2023-02-10	2023-05-10	4.00	4,500,000
2023-02-10	2023-05-10	4.00	5,300,000
2023-03-02	2023-06-02	4.00	10,000,000
2023-04-17	2024-04-17	3.38	15,427,445
2024-03-08	2024-09-08	3.67	15,700,000
2024-07-05	2025-07-05	3.38	4,619,142
계			123,368,169

다. 지출계획

○ 2025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756억 4천 3백만원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건설비 645억 6천 1백만원 외 운영비, 유형·무형자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 1,354억 1천 7백만원 보다 597억 7천 5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표-42] 2025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분 야	부 문	정 책	단 위	세 부	사업내역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C=A-B)
[050]교육						75,642,646	135,417,310	△59,774,664
[054]교육일반						75,642,646	135,417,310	△59,774,664
[02]기관운영						75,642,646	67,091,293	8,551,353
[02]교육행정기관시설						75,642,646	67,091,293	8,551,353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C=A-B)
					[01]기관시설유지관리	75,642,646	67,091,293	8,551,353
					신청사 건립	75,642,646	67,091,293	8,551,353
					설계비	58,118	-	58,118
					시설비	61,665,309	64,663,141	△2,997,832
					감리비	2,041,128	1,770,000	271,128
					시설부대비	796,091	168,152	627,939
					이사비	385,000	-	385,000
					미술작품 설치비	699,000	-	699,000
					ICT 시스템 운영	1,105,000	-	1,105,000
					전산망시설비	435,000	-	435,000
					ICT 시스템HW	4,312,000	-	4,312,000
					ICT 시스템SW	1,180,000	-	1,180,000
					사무레이아웃	2,966,000	-	2,966,000
					급식 기구	-	490,000	△490,000
					[03]재무활동	-	68,326,017	△68,326,017
					[05]예치금	-	68,326,017	△68,326,017
					[01]예치금	-	68,326,017	△68,326,017
					예치금	-	68,326,017	△68,326,017
					지출 합계	75,642,646	135,417,310	△59,774,664

○ 2025년도 신청사 건립 ‘기관운영’ 비용의 경우 756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670억 9천 1백만원 대비 8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신청사 건립 비용의 증액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 683억 2천 6백만원과 2025년도 이자수입 73억 1천 7백원을 합한 금액인 756억 4천 3백만원을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43] 2025년 신청사 건립 ‘기관운영’ 편성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내역	지출계획액	비고
설계비	시설공사	58,118	

구분	세부내역	지출계획액	비고
시설비	시설공사(건축)	41,584,000	토목, 기계, 조경 포함
	시설공사(전기)	4,897,000	
	시설공사(통신)	1,279,000	
	시설공사(소방)	1,453,309	
	관급구매(건축)	4,829,000	
	관급구매(기계)	547,000	
	관급구매(전기)	2,779,000	
	관급구매(통신)	4,297,000	
감리비	공사감리	2,041,128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및 부대경비	796,091	
이사비	청사 이전 경비	385,000	
미술작품 설치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	699,000	
ICT시스템운영	스마트오피스 구축 운영비	1,105,000	감리, SW라이선스 임대등
전산망시설비	유·무선망 네트워크장비	435,000	
ICT시스템HW	VDI 관련 하드웨어 구입 등	4,312,000	
ICT시스템SW	VDI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등	1,180,000	
사무레이아웃	사무용 가구 구입	2,966,000	
계		75,642,646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 현황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공사 공정률이 28%로, 지하 1~2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준공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에 신청사에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44] 신청사 건립 향후 추진 일정

구분	추진 내역	추진 시기
토목	스트러프 및 띠장 철거, 가설램프 철거	2024. 4. ~ 2024. 12.
건축 / 부대 토목	골조(RC+PC)·수장·마감공사·조경 등	2024. 4. ~ 2025. 12.
스마트오피스 구축	네트워크 및 스마트오피스 ICT 시스템 구축	2024. 8. ~ 2025. 12.
청사 이전	가구 배치 등 순차적 신청사 입주	2026. 1. ~ 2.

- 따라서 동 기금의 설치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므로,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16일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동 기금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은 2021년 준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는바 또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촉직의 인원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 등에 따른 민간전문가 1/3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 문제는 없으나, 위촉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촉위원 중 전직 교육청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간전문가를 1/3이상 포함하도록 한 지방기금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이미 당연직으로 교육청 직원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민간전문가로 전직 교육청 직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8월 외부 위원의 임기를 그대로 연장하였는바 이는 성과분석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5]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임기	
당연직	위원장	설○○	부교육감	재임기간
	위원	정○○	교육행정국장	재임기간
	위원	고○○	총무과장	재임기간
	위원	박○○	예산담당관	재임기간
	위원	이○○	청사이전추진단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	이○○	LK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2024.08.~2026.08.
	위원	성○○	SJ 인터내셔널 회계사	2024.08.~2026.08.
	위원	윤○○	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08.~2026.08.
	위원	이○○	(前)교육행정국장	2024.08.~2026.08.